학교규칙

제 정: 1997. 3. 1. 개 정: 2021. 2. 18.

제 1 장 총 칙

- 제1조 【목적】 이 학교 규칙(이하 학칙)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서해중학교의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준거】 본 규정은 교육과학기술부 및 경기도교육청 지침, 초·중등교육법 제8조, 학교규칙 운영지침(학교설립과-5374, 2005.12.1.), 2007학년도「학칙보고제」운영지침(07.3.9.)을 준거로 한다.
- 제3조 【정의】 이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휴업"이라 함은 학업을 얼마 동안 쉬는 것을 말한다.
 - ② "수익자부담경비"라 함은 본교 사업의 실시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인 부담을 말한다.
- 제4조 【교육목표】 서해중학교(이하 "본교"라 한다)는 '소통과 배려로 성장하는 행복한 서해인'을 교육목표로 한다.

제 2 장 명칭 및 위치

제5조 【명칭】 본교는 서해중학교(西海中學校)라 한다.

제6조 【위치】 본교는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옥구천서로 373번길 18에 둔다.

제 3 장 수업연한, 학년, 학기 및 휴업일

제7조 【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자의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제8조 【학년】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9조 【학기】 학년은 학기를 2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여름방학 종료일 까지 제2학기는 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 단, 긴급 상황 발생 시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작일과 종료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 【휴업일】

- ①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관공서의 공휴일
 - 2. 개교기념일 : 5월 4일
 - 3. 사계절방학(방학분산제)
 - 4. 학교장재량휴업일
 - 5. 주5일 수업제 운영에 따른 토요 휴업일
- ② 제①항 제3호 방학 기간은 수업일수,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조절할 수 있다.
- ③ 제①항 제4호 학교장 재량휴업일은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 ④ 제①항 각 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제 4 장 학급편제 및 학생 정원

- 제11조 【학급수 및 학생 정원】 본교의 학급수 및 학생 정원은 당해 년도 학생수용계획에 의하여 매년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정하여 통보한 학급수 및 학생 정원으로 한다.
 - ① 본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지정하는 학년도별 수용계획에 따른다.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①항의 학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정원 외로 관리할 수 있다.
 - 1. 유급생
 - 2.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자녀

- 3. 기타 교육감이 정하는 자
- 4. 유예 및 면제 처리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제29조에 의거 정원외로 관리한다.

제 5 장 교육과정, 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 졸업

제12조 【교육과정】 교육과정은 「경기도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에 의한다.

제13조 【수업운영】

-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 ④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학생의 교류학습, 현장 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해중학교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의거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⑤ 학교장은 교육의 본질 추구와 학생 개개인의 특기 신장 등을 위하여 교과활동 외에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4조 【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시험 및 평가】

- ① 교과학습의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고사는 1학기 1,2차 평가와 2학기 1,2차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나, 고사 횟수는 당해연도 교과협의회에 따른다.
- ②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고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고사에 관한 제반사항은 경기도교육청 「중학교학업성적관리시행 지침」 및 본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다.

제16조 【수료 및 졸업 등】

-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 ② 학생의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

- 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 ③ 학교장은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는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 6 장 입학, 재취학, 전·편입학, 유예 및 면제

- 제17조 【입학자격】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한다.
 - ①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
 - ②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6조에 의거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 제18조 【입학시기】 학생의 입학, 재취학 또는 편입학은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9조 【입학방법】

- ① 본교의 입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8조 및 제69조에 의거 배정받은 자에 한하여 학교장이 이를 허가한다.
- ②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5조에 해당하는 귀국학생 등은 학교장이 따로 정하여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제20조 【재취학】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외로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동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 결정을 받은 자가 재취학을 원할 때에는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하여 학교장이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21조 【전·편입학】

- ① 본교에 전·편입학은 초·중등교육법 제73조 및 제74조에 의거 배정받은 자에 한하여학교장이 이를 허가한다.
- ②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또는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입학(전학, 편입학 포함)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5조에 의거 학구내 거주지에 거주하는 자에 한하 여 학교장이 이를 허가한다.
- 제22조 【유예 및 면제】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 능한 자는 보호자의 신청으로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유예 또는 면제를 결정할 수 있다.
 - ①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이를 유예하거나

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유예 및 면제 결정을 할 때에는 보호자와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 【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 ① 학교장은 입학 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 결석자는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 외로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초·중등 교육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나 유예 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학년을 정할 수 있다.
- 제24조 【입학서류】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25조 【전·편입학 서류】 본교에 전·편입학하려는 자는 전·편입학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 【보증인】

- ① 보증인은 학생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 한다.
- ② 제①항의 보증인이 학교 소재지에 부재한 경우에는 본교 소재지에 주소를 가지고 독립의 생계를 영위하는 성년자 중에서 부 보증인을 정하여야 한다.
- ③ 보증인·부 보증인이 그 신상에 이동이 생긴 때, 또는 주소지를 변경할 때에는 즉시 학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7 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27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 ① 본교는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 원회의 이수인정평가를 거쳐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인정할 수 있다.
- ② 제16조 제③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기졸업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28조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

①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인정을 위하여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조기진급·조기졸업·진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규정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 8 장 기타비용의 징수

제29조 【기타비용의 징수】 수익자부담경비(현장학습비 등)와 같이 교육과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징수한다.

제 9 장 학생포상 및 징계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제30조 【학교생활규정】

- ① 학교생활규정을 학생생활인권규정이라 한다.
- ② 학교장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과 준법의식을 함양하여 법치주의 사회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별도로 제정·운영하다.
- ③ 학교장은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교육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제31조 【포상】

- ① 포상대상자는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효행심이 투철한 자, 봉사 정신이 강한 자, 또는 학교에 공로 가 있는 자 등으로 한다.
- ② 포상에 관한 세부 규정은 별도로 교내상 포상규정으로 정한다.

제32조 【학생생활교육】

- ① 본교의 교원이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체벌을 금지하며 인권을 존중하는 회복적 생활 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학생의 생활교육 방법은 학칙 및 학생생활인권규정에 따른다.

제33조 【징계】

①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

여야 한다.

- 1. 학교 내의 봉사
- 2. 사회봉사
- 3. 특별교육이수
-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② 학교장이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고,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제①항의 징계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1차적으로 학교에서 특별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도하며,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의 기간에는 교육장이 지정하는 기관(Wee 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상담, 치료 등 특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제①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제 10 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34조 【학생자치활동】

- ① 본교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적성 신장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해중학교 학생자치회(이하 '학생회'라 한다)를 둔다.
- ② 기타 '학생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제정·운영 한다.
- 제35조 【학생의 의무】 학생은 학칙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연구 등 본교의 기본 기능수행에 방해가 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다.

제 11 장 보칙

제36조 【학칙개정 절차】

- ① 학칙은 학교장의 제안에 의하여 법령(법, 조례, 지침 등)의 범위에서 교직원회의의 사전 협의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
- ② 제①항의 학칙개정은 학교장의 발의에 의하여 제안되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는 재적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③ 제안된 학칙개정안은 이를 20일 이상 학교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

다.

④ 기타 학칙개정안의 제안 방법, 학생의 참여 방법 등 학칙 개정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학칙은 1997년 3월1일 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학칙은 2019년 3월1일 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학칙은 2021년 2월 18일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2조 【시행세칙】 본 학칙의 시행 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